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 나. 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안 별표4)
- 다.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 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 마. 아파트등 세대점검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완화(안 별표10)
-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 사.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3.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지하구(地下溝)”를 “지하구(地下溝),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3) 중 “이상”을 “이상(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경우 150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해당 무대부”를 “해당 무대부(객석 포함)”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경우”를 “층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것

별표 5 제1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효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 경우 감전 및 장비 또는 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 중 “방수구 인근”을 “방수구 또는 살수장치의 인근”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대상,”을 “대상, 점검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위반행위란 1) 중 “경우”를 “입주민”으로 하며, 같은 란 사목 1)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위반행위란 2)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점검방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3) 및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나)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다)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4 제2호 다목13), 같은 표 제5호 다목5)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조산원·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u>지하구(地下溝)</u>	6. ----- ----- ----- ----- ----- ----- ----- ----- ----- ----- ----- ----- - <u>지하구(地下溝)</u> ,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설비	2. 정보설비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u>500배</u>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3) ----- ----- ----- ----- <u>500</u> <u>배 이상(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경우 1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u>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3. 피난구조설비	3. 피난구조설비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 ----- -----.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말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	1) ----- ----- ----- -----

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생략)

다. ~ 마. (생략)

4. (생략)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생략)

-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

- 2)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

3)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소화활동설비

가. -----

-----.

- 1) -----

----- 무대부(객석 포함)

2) (현행과 같음)

- 3) -----

----- 층의 -----

4) ~ 7) (생략)

나. (생략)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
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7) (신설)

4) ~ 7)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

1) ~ 6) (현행과 같음)

7)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의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것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u>물분무등소화설비</u>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 ----- ----- ----- <u>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u> -----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특정소방대상물에 <u>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u>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 ----- ----- <u>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u> ----- ----- -----.
5. <u>물분무등소화설비</u> : <u>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u>	5. <u>물분무등소화설비</u> 가. <u>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u>

나. (신 설)	나. <u>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효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 경우 감전 및 장비 또는 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u>
6. ~ 21. (생 략)	6. ~ 21. (현행과 같음)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3. ----- ----- -----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 <u>방수구</u>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	가. ----- ----- ----- ----- <u>방수구 또는 살수장치의</u>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u>대상</u>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 ----- ----- <u>대상</u> , <u>점검방법</u> , -- ----- -----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50	1) ----- ----- ----- -- <u>입주민</u> : 10
2)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u>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u>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2) ----- ----- <u>점검방법 등</u>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3) (<u>신설</u>)	3) <u>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u> <u>가)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u> <u>나)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u> <u>다) 배치상황 통보(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u>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7522